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6. 12.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변경사항과 용어 및 관련조항 정비 등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 삭제(안 제20조)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위임(안 제83조)
 - 1,000원(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 1,500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목(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등) 허용(안 별표3)
-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장례식장 삭제(안 별표6)
-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의 연면적을 3,000㎡ 미만으로 제한(안 별표6, 별표13)
-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허용(안 별표18)
- 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10,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 허용(안 별표19, 별표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어 및 관련조항 보완정비(안 제34조 내지 제

39조, 제45조, 제50조 내지 제53조, 제55조 내지 제57조, 제67조,
별표1 내지 별표23)

3. 참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분류)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중 “금액을 말한다.”를 “금액으로 하고, 이행보증금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에 2월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제1호 내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제1호 내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제1호 내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제1호 내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
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
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
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
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제1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
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

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9조제1호 내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
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
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
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
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0조제1호 내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4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
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1조제1호 내지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1호 내지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목, 사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동·식물원중 식물원 및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52조제1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3호 내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및 집회장 중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갇셈·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3조제2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5조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6조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7조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64조제3항중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하고, “제62조”를 “제 64조”로 한다.

제83조본문중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를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아목, 차목, 카목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다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

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목, 사목, 자목, 차목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다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및 너비15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차고에 한한다)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전신전화국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 시설소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4 자목의 공장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차고에 한한다)과 주차장 및 세차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및 동별표 제16호의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자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것과,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및 동별표 제16호의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자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가목·나목·라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것과,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나목(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바목, 사목, 자목(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안마시술소·안마원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에 한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중·고등학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연구소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목 및 라목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18층 이상의 아파트는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목을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다목, 라목, 사목 및 아목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어가 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마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가목,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

- 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7호의 공장(동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2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
시설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
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
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
반음식점(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
는 것에 한한다)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
원·치과병원·한방병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
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
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
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
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 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별표 18 제2호마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자.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아목(1) 내지 (5)에 해당하는 것
-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장
- (3)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7401	숨 및 실 염색 가공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7403	날염가공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19101	원피가공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 산화물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 스틱물질 제조업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 원료 생산업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향생 물질 제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4312	농약 제조업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 중 성형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제조업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7132	강관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 강재 생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8922	도금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휴게소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2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2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1. 영 별표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18 제2호마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것

【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2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별표 18 제2호마목 및 별표 19 제2호아목·자목의 공장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0조(조건부 허가)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 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4. 조정·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할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삭 제>			○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7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위임이 없으므로 삭제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 9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정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 9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정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 ----- ----- 금액으로 하고, 이행보증금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 이행보증금 산정방법 및 보증기간에 따른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 9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 9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59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에 2월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 7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자연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제34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 7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자연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제34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 「건축법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분류에 따른 개정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가축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자연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타이 있	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	○ 「건축법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분류에 따른 개정
--	---	--------------------------------------

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6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8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1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2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3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4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 72조 1항의 규정에	제36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 「건축법 시행령」 별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2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3호의 공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4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묘지관련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6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표1 건축물의 분류에 따른 개정
---	---	--------------------------

제37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을 제외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6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저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분류에 따른 개정
---	---	--------------------------------------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시설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제38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 7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공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창고시설	제38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분류에 따른 개정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묘지관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제39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 7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제39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분류에 따른 개정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6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7호의 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7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 저장시설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8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 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0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1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 「건축법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한) ① (현행과 같음)	시행령」별표1 건축물의 분류에 따른 개정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7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2호의 위락시설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6호의 위락시설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3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7호의 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4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공공용시설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갇셈·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갇셈·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③ (생략)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50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서의 건축제한) 영 제 7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0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 「건축법시행령」별표1 건축물의 분류에 따른 개정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4호의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 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5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5호 의 판매시설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6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 소 및 장례식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6호 의 운수시설	
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1호의 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9호 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 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2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5호 의 숙박시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3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6호 의 위락시설	
7.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7호 의 공장	
8.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8호 의 창고시설	
9.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동차세차장 및 주 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9호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 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7호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가축 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0호 의 자동차관련시설 (세차장 및 주 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8호 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1호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9호 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해 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 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2호 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0호 의 묘지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3호 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 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6호 의 묘지관련시설	
제51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 77조제 1항의 규정에	제51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현행과 같음)	○ 「 건 축 법 시 행 령 」 별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 집 회장의 회의장 공회장 등 식물원중 식물원을 제외한다) 4.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시장(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을 제외한다)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 널 다. 철도역사 라. 공항시설 마.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7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연구소 및 도 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5호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6호 의 자동차관련시설 1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7호 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8호 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9호 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제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호 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2호 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3호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목, 사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4호 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5호 의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 장, 동·식물원중 식물원 및 집회장 의 회의장·공회당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6호 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7호 의 판매시설 중 시장(백화점·쇼핑 센터·대형점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8호 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9호 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0 호의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도서 관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1 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2 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3 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4 호의 숙박시설	표1 건축물 의 분류에 따른 개정
---	--	-----------------------------------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갇셈 보 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0호 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바, 사, 안목은 제 외) 17.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18.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9호의 운동시설 19.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호 의 숙박시설 20.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호 의 관광휴게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 호의 위락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 호의 공장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 호의 창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 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 호의 자동차관련시설 2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 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 호의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 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갇셈 보 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2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 호의 묘지관련시설 2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 호의 관광휴게시설	제52조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 7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 31조제 2항제 5호 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 다)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 식 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 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6호의
제52조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 7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 31조제 2항제 5호 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 다)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 식 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 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6호의	제52조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호 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2호 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5호 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동 식 물원 및 집회장 중 회의장 공회장 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6호	○ 「 건 축 법 시 행 령 」별 표1 건축물 의 분류에 따른 개정

판매 및 영업시설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5.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4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카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5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6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해당하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20호의 묘지관련시설	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8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3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 7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생 략)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제53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7	○ 「건축법시행령」별표1 건축물의 분류에 따른 개정
--	---	--	--	-------------------------------------

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호의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건축물의 분류에 따른 개정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발전시설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5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 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 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제14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호의 숙박시설 2. 제14호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호의 위락시설 3. 제14호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5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6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 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 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3호 가목의 슈퍼마켓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6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슈퍼마켓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건축물의 분류에 따른 개정
제57조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3호 가	제57조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3호	

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1호 내지 제 6호의 지역에서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 (생략) 제67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을 완화) ①영 제 83조제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times$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생략) 제8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 12조제 1항에 따라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 ----- -----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을 완화)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 ----- ----- ----- ----- -----제 64조----- ----- ----- ----- -----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10조제 2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구미시	○ 「임대주택법」 개정 에 따라 반영 ○ 상 위 법 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개정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정수기준에 관
---	--	--

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따른다.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한 규정에 따라 개정 ○ 「국 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반영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국 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반영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 「국 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반영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아목, 차목, 카목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목(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허용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사목, 아목, 차목, 카목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및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 및 학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동호, 가목, 나목, 바목 및 아목과 자목의 도시가스공급 시설중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10층 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단독주택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공동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 「국 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반영

이하인 것과 상점으로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의료시설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의료시설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다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다목, 마목, 자목 및 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3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업무시설 중 동호 가목 · 오피스텔 · 금융업소 및 사무소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금융업소 · 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6호의 공장 중 아파트형공장 · 인쇄 · 기록매체복제업 · 봉제 (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 (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 22조 제 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 22조 제 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 22조 제 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 22조 제 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 2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 22조 제 3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 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 22조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 22조 제 5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 22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 22조 제 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	

상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한다) 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도시가스공급시설중 도시가스지역정압기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바목, 사목, 차목, 차목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과 상점으로서 너비 15미터	(6) 「소음·진동규제법」 제 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목, 사목, 차목, 차목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 「국 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반영
--	---	--

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0호의 교육연구시설(다목적 및 다목적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2호의 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및 너비 15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3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다목적, 다목적 및 너비 15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4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의 업무시설 중 동호가목·오피스텔·금융업소 및 사무소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9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도시가스지역정압기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도시가스지역정압기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차고에 한한다)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세차장 및 차고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4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전신전화국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4호의 공공용시설 중 전신전화국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시행령 및 도시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 7 제 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	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설소	반영과 판매 시설 면적 제한(연면적 3,000㎡) 및 장례식장 삭제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2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3호의 판매시설 (해당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3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7호의 공장 중 별표 4 자목의 공장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8호의 창고시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9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0호의 업무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차고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3호의 공장중 별표 4 카목의 공장	과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4호의 창고시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	
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세차장 및 차고	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9호의 공공용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11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별표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1. 영 별표 8 제 1호 각 목의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 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 원·한방병원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초· 중·고등학교 및 자연권수련시설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0 호의 업무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 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 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 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 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 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 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 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 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 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 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 호의 공장 중 출판·인쇄 및 기록매 체복제공장으로서 별표 4 카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 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 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및 나목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 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숙박시설 및 동별표 제 1호의 위락 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 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 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 축하는 것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 과병원·한방병원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0호의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중 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1호의 노유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2호의 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3호의 운동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자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법률 시행 령」 별표 개 정에 따른 반영
--	--	---------------------------------

의 시설을 제외한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하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의료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0호의 업무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위락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과,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및 동별표 제16호의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자목 (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반영
--	---	--

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공장 중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서 별표 4 카뎁(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창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가목·나목·라목·사목에 해당하는 것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하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목·나목·라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것과,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	○ 「국 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반영
--	--	--

호의 의료시설 (격리병원을 제외한)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별표 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시행령 및 도시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영 별표 11 제 1호 각 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령」 별표 개 정에 따른 반영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반영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4호의 업무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0 호의 업무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5호의 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 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 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 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 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반영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 호의 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 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 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 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 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나목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 하는 것에 한한다), 바목, 사목, 자 목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 에 한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 호의 창고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예차장은 제외한다)	반영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 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 목, 나목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 는 것에 한한다), 마목, 바목, 아목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반영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 12 제 1호 각 목의 건축 물	
가. 「건축법 시행령」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반영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당 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 용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반영

○ 「국 토 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개
정에 따른
반영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 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라목 내지 사목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 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 및 연 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 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 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 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 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 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 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 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 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호의 단독주택중 나목 및 다목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호 공동주택중 기숙사(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하 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	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안마 시술소·안마원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 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 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 32조에 따 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 및 연구소 (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 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3 제1호 각 목의 건축 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호의 단독주택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당해 지역 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에 한하 다)	○ 「국 토 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개 정에 따른 반영
--	--	---

장·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반영과 판매시설 면적 제한(연면적 3,000㎡)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중·고등학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연구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중·고등학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마목 및 사목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공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목 및 라목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목 및 라목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공공용시설 중 라목 내지 아목		
【별표 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별표 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공동주택(18층 이상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공동주택(18층 이상의 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목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목을 제외한다)	호의 종교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반영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호의 판매시설 (해당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3,000㎡만인 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의료시설	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	
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운동시설	13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0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업무시설	14호의 업무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숙박시설	15호의 숙박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공장	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7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창고시설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	동호다목, 라목, 사목 및 아목	
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	24호의 방송통신시설	
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		
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다목, 라목, 사목 및 아목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		
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		
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 라목 내지		
아목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영 별표 15 제 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어가 주택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어가 주택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 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건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 【별표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자목과 학교(초·중·고등학교에 한한다),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건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별표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 1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 22제 8	○ 「국 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반영
--	--	--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제 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제 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 2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 2조제 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 2조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 용에 한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6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제 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 2조제 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 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 2조제 5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 2조제 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국 토 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반영
---	---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문화및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종교시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6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 2조제 2호·제 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2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68조제 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 2조제 2호·제 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의료시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사목(1) 내지 (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마목(1) 내지(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농업·임업·축산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가목, 나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및 아목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공공용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묘지관련시설 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예차장은 제외한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가목,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19 제1호 각 목의 건축	○ 「국 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반영 ○ 「국 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반영과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허용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단독주택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13호의 공장(동 별표 제 4호의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별표 15 사목(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창고시설 (농·임·축·수산업 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7호의 공장(동 별표 1 제 4호의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 제 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나목,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 제 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9호의 공공용시설 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 2조 제 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 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 2조 제 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다목중 휴게음식점, 라목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아목(「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외 제외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1 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일반음식점의 경우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내지 바목, 아목, 자목, 카목, 타목(안마시설소·안마원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5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6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다목,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7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8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과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 20 제 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1 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4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3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 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 「국 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영 과 10,000㎡미만의 공장 제한적 허용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공장중 별표 15 사목의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 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2) 시장이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하는 지역(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에 한한다)에 입지할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공공용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휴게소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에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8 제2호마목(1) 내지(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 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자. 「환경정책기본법」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아목(1) 내지 (5)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관리법」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	--

		한국표준 산업분류 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7401	숨 및 실 염색 가공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7403	날염가공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19101	원피가공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 죽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 용 판지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 조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 리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 물 제조업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 물 제조업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u>24129</u>	<u>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u>
	<u>24131</u>	<u>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 산화물 제조업</u>
	<u>24132</u>	<u>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 타 착색제 제조업</u>
	<u>24141</u>	<u>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u>
	<u>24149</u>	<u>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 물 제조업(유기질 비료 는 제외)</u>
	<u>24151</u>	<u>합성고무 제조업</u>
	<u>24152</u>	<u>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 스틱물질 제조업</u>
	<u>24153</u>	<u>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 원료 생산업</u>
	<u>24211</u>	<u>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 물질 제조업</u>
	<u>24212</u>	<u>생물학적 제제 제조업</u>
	<u>24230</u>	<u>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u>
	<u>24311</u>	<u>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u>
	<u>24312</u>	<u>농약 제조업</u>
	<u>24321</u>	<u>일반도료용 및 관련 제품 제조업</u>
	<u>24331</u>	<u>계면활성제 제조업</u>
	<u>24332</u>	<u>치약, 비누 및 기타 세 제 제조업(비누제조업 중 성형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u>
	<u>24341</u>	<u>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u>
	<u>24342</u>	<u>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u>
	<u>24391</u>	<u>가공 및 정제업 제조업</u>

	<u>24392</u>	<u>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u>
	<u>24394</u>	<u>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u>
	<u>24399</u>	<u>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u>
	<u>24401</u>	<u>합성섬유 제조업</u>
	<u>25111</u>	<u>타이어 튜브 제조업</u>
	<u>25112</u>	<u>타이어 재생업</u>
	<u>25192</u>	<u>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u>
	<u>25213</u>	<u>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u>
	<u>25221</u>	<u>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u>
	<u>25292</u>	<u>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u>
	<u>26121</u>	<u>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u>
	<u>26993</u>	<u>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u>
	<u>27111</u>	<u>제철 및 제강업</u>
	<u>27112</u>	<u>합금철 제조업</u>
	<u>27119</u>	<u>기타 제철 및 제강업</u>
	<u>27121</u>	<u>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u>
	<u>27122</u>	<u>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u>
	<u>27123</u>	<u>철강선 제조업</u>
	<u>27132</u>	<u>강관 제조업</u>
	<u>27191</u>	<u>절단가공 및 표면처리 강제 생산업</u>
	<u>27199</u>	<u>그 외 기타 철강산업</u>

	<u>27211</u>	<u>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u>
	<u>27212</u>	<u>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u>
	<u>27213</u>	<u>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u>
	<u>27219</u>	<u>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 련 및 합금 제조업</u>
	<u>27221</u>	<u>동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u>
	<u>27222</u>	<u>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u>
	<u>27229</u>	<u>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 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u>
	<u>27290</u>	<u>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u>
	<u>27311</u>	<u>선출주물 주조업</u>
	<u>27312</u>	<u>강주물 주조업</u>
	<u>28921</u>	<u>금속 열처리업</u>
	<u>28922</u>	<u>도금업</u>
	<u>28923</u>	<u>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u>
	<u>28929</u>	<u>기타 금속처리업</u>
	<u>28991</u>	<u>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 기 제조업</u>
	<u>31402</u>	<u>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 머 이차전지, Ni-MH 이 차전지는 제외)</u>
	<u>31510</u>	<u>전구 및 램프 제조업</u>
	<u>32192</u>	<u>인쇄회로판 제조업</u>
	<u>37100</u>	<u>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 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u>
	<u>37200</u>	<u>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u>

【별표 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2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등학교 및 자연권수련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4호의 창고시설 (농·임·축·수산업 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6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7호의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 및 통신용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8호의 묘지관련시설	18호의 창고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예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휴게소 【별표 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 21 제 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반영
【별표 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목 내지 사목의 건축물은 국토,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의 단독주택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어가주택을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0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 22 제 1호 각 목의 건축물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국토,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반영

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 및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0호의 묘지관련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6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또는 제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 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5호의 발전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68조제 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 2호·제 3호 또는	○ 「국 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반영
---	---	--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등학교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 용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가목, 나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공공용시설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마목(1) 내지(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	---	--

【별표 23】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다목중 휴게음식점, 라목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아목(「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1 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다목,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과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자. 별표 18 마목 및 별표 19 자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동호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3】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 27 제 1호 각 목의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1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별표 18 제2호아목 및 별표 19 제2호아목·자목의 공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동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영 과 10,000㎡미만의 공장 제한적 허용
--	---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 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예차장 및 매 매장을 제외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 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 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 호의 공공용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 호의 묘지관련시설		
--	--	--

참 고 자 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별표23, 27
[별표 2] <개정 2006.8.17>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개정 2006.8.17>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개정 2006.8.17>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개정 2006.8.17>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뭇길 및 나뭇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

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06.8.17>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개정 2006.8.1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 (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8] <개정 2005.9.8, 2006.8.1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9] <개정 2005.9.8, 2006.8.17>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후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 (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0] <개정 2005.9.8, 2006.8.17>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 (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 <개정 2006.8.17>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 <개정 2006.8.17>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개정 2006.8.17>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 <개정 2006.3.23, 2006.8.17>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5] <개정 2006.8.17>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 <개정 2006.8.17>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

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7] <개정 2004.1.20, 2005.1.15, 2006.3.23, 2006.8.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

업용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 <개정 2005.7.27, 2006.8.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 <개정 2006.8.17>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0] <개정 2004.1.20, 2005.1.15, 2005.7.27, 2005.9.8, 2006.8.17>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

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카목(1) 내지 (5)에 해당하는 것
 -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 (3)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7403	날염가공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19101	원피가공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3210	원유 정처리업
23221	유탄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4312	농약 제조업
24321	일반도로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391	가공 및 정제업 제조업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7132	강관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8922	도금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1] <개정 2006.8.17>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개정 2006.8.17>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3] <개정 2006.8.17>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 27] <개정 2004.1.20, 2005.1.15, 2005.7.27, 2005.9.8, 2006.8.17>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3조제1항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20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 (2) 법률 제66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중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0 제2호 카목에 따른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 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적 마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다. 별표 19 제2호 자목 및 별표 20 제2호 카목·타목의 공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2006.5.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 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점골원 및 조산소
-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자.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일반음식점·기원
-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 의사·동물병원·독서실·충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마.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삭제 <2006.5.8>

마. 삭제 <2006.5.8>

바. 삭제 <2006.5.8>

사. 삭제 <2006.5.8>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마. 집배송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삭제 <2006.5.8>

아. 삭제 <2006.5.8>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2003.2.24>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충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위험물취급소

바. 액화가스취급소

사. 액화가스판매소

아.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자.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도료류 판매소

카.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20.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차장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가축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버섯재배사
- 바. 종묘배양시설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다. 군사시설
- 라. 삭제 <2006.5.8>
- 마. 삭제 <2006.5.8>
- 바. 삭제 <2006.5.8>
- 사. 삭제 <2006.5.8>
- 아. 삭제 <2006.5.8>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

-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라. 통신용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26. 묘지관련시설

- 가. 화장장
- 나.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 나. 야외극장
- 다. 어린이회관
- 라. 관망탑
- 마. 휴게소
-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6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9567호, 2006.6.29>

-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제2조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관련)

종 류	금 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 필지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 주택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 주택당 800원
「지방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 건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 필지당 1,000원(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 「임대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5.7.13>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신고시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②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13>